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36호
2022. 5. 2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41호) 1

공 고(1)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2-559호) 2

입법예고(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62호)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67호)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68호) 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69호) ...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0호)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1호) 5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3호) ... 6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5호) ... 7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6호) 82

행정예고(1)

-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2-578호) 90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신탄진동 161-4	신탄진동로 55	2022. 5. 27.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신탄진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2-10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142 -10번지	12.5㎡	0.7m	18.01m	대덕구청장

2.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공공청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공청사과(전화: 042-608-5253, FAX: 042-608-3859,
E-mail: abara400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청사과 담당자 김하정(전화: 042-608-52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사건립 기금”을 “청사건립기금 조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을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예탁”을 “예탁(豫託)”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u>청사건립 기금</u>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u>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u> 한다)을 설치한다.</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생략)</p> <p>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p>	<p>제1조(목적)</p> <p>----- ----- -----</p> <p>----- <u>청사건립기금 조성</u> ----- -----</p> <p>-----.</p> <p>제2조(기금의 설치)</p> <p>----- ----- ----- ----- -----</p> <p>-----</p> <p><u>청사건립기금(이하</u> “기금”-----.</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p> <p><u>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u>-----.</p> <p>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예탁(豫託)-----.

제10조(준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로 설치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연차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및 조례 제1485호 부칙 제2조제2항·제3항 삭제).

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중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인용 법령 명칭 등을 띄어쓰기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42-608-6272, FAX: 042-608-3823, E-mail: ho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김동후(전화: 042-608-6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4.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명칭	구분	위치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을미기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경기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인라인스케이트장 (법동)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촌전천후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청수상레포츠센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타워1어린이스포츠센터	어린이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9-7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구분	기준	구분		비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66,000	110,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퍼센트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체육경기외	1회 (1일, 4시간)	110,000	165,000		
을미기독교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44,000	66,000		
		1회 (1일, 4시간)	66,000	88,000		
	체육경기외	1회 (1일, 2시간)	66,000	110,000		
		1회 (1일, 4시간)	110,000	165,000		
족구경기장	체육경기	1면, 2시간	3,300	5,500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20,000		330,000
		체육경기외	1회 (1일, 4시간)	330,000		495,000
	다목적실	1회 (1일, 4시간)	44,000	66,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송촌생활체육공원풋살경기장	체육경기	1면, 1시간	15,000	25,000	○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징수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 8시간)	1,100,000	1,650,000		
	체육경기외	1회 (1일, 8시간)	1,430,000	1,980,000		
덕암체육공원야구장	체육경기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체육경기외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비고
		사용구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5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5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52,000		
	1회 이용		4,3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000		○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평일 (1면, 1시간)	3,300		○ 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3,000원 가산한 금액 징수	
		주말 (1면, 1시간)	5,500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8,800	6,600	5,500	○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 대덕구 주민일 경우 2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17,000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징수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래프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버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마이크 1대당 5,000원	
전기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광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류	기준	방송료		비고	
		TV	라디오		
프로 경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마추어 경기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고
에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및 18세 이하 자녀</u></p> <p>5. (생략)</p> <p>6.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7.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8.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9.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0. ~ 1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u></p> <p>5. (현행과 같음)</p> <p>6.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p> <p>7.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p> <p>8.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 -----</p> <p>9.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p> <p>10.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
른은 2021년 4만원, 2022년 4만5천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2만9천원, 2022년 3만3천원으로, 어린
이는 2021년 2만원, 2022년 2만4천원으로 한다.

③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
른은 2021년 5만4천원, 2022년 5만8천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4만2천원, 2022년 4만5천원으로, 어린
이는 2021년 2만6천원, 2022년 3만2천원으로 한다.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캠핑장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물가·인건비·공과금 등의 상승률을 고려한 시설 사용료, 성수기 기간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캠핑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캠핑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캠핑장 시설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1호).

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수기의 구분을 정비함(안 제3조제3호).

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마. 캠핑장 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별표 3).

사. 그 밖에 법령 등의 명칭을 띄어쓰기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0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42-608-6272, FAX: 042-608-3823, E-mail: ho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김동후 (전화: 042-608-6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오토캠핑장 :”을 “오토캠핑장:”으로, “장동 685-1번지 일원”을 “산디로 190 (장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캠핑장 :”을 “캠핑장:”으로, “미호동 643-2번지 일원”을 “대청로424번길 200 (미호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카라반, 카라반사이트, 글램핑”을 “글램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7월과 8월을”을 “7월부터 10월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평일 :”을 “평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말 :”을 “주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
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가.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캠핑장	시설별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고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1개소/1일	평일	32,000	37,000		
			주말	37,000	42,000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글램핑	2인/1일	평일	140,000	170,000		
			주말	170,000	200,000		
		6인/1일	평일	200,000	250,000		
			주말	250,000	300,000		
	오토캠핑장	1개소/1일	평일	32,000	37,000		
			주말	37,000	42,000		
	풋살경기장	1면/1시간	평일	10,000	20,000		주간
			주말	20,000	20,000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오토캠핑장: 4명 초과 시 1명당(초등생 이상) 5,000원

나. 글램핑: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초등생 이상) 10,000원

2.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다. 4시간 이상 초과: 1일 사용료

3. 캠핑카 또는 카라반을 동반한 이용자의 경우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바비큐장	30,000	숯, 그릴 포함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8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6~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4~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9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8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6~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4~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2~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0퍼센트 배상
비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퍼센트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디마을 생태공원 <u>오토캠핑장</u> : 대전광역시 대덕구 <u>장동 685-1번지 일원</u></p> <p>2. 로하스 가족공원 <u>캠핑장</u> : 대전광역시 대덕구 <u>미호동 643-2번지 일원</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u>오토캠핑장, 카라반, 카라반사이트, 글램핑, 놀이터, 수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성수기”란 1년 중 <u>7월과 8월</u>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p> <p>4. 5. (생략)</p> <p>6. 평일 및 주말 구분 가. <u>평일</u> : 일요일부터 목요일</p>	<p>제2조(명칭 및 위치) ----- ----- -----.</p> <p>1. ----- <u>오토캠핑장</u>: ----- <u>산디로 190 (장동)</u></p> <p>2. ----- <u>캠핑장</u>: ----- <u>대청로424번길 200 (미호동)</u></p> <p>제3조(정의) ----- ----- -----.</p> <p>1. ----- ----- <u>글램핑</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7월부터 10월까지</u>를----- -----.</p> <p>4. 5. (현행과 같음)</p> <p>6. ----- 가. <u>평일</u>: -----</p>

까지

나. 주말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라.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나. 주말: -----

-----.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라.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
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
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제16조(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삭제).

나.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과 주기를 회계연도마다 구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함(안 제66조 신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6.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전화: 042-608-5303, FAX: 042-608-3829, E-mail: 2garde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담당(전화: 042-608-5303, 5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개별법령 또는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제15조의 제목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을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하고자”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된다”를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관리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을 “사용허가관리대장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를”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덕구(이하“구””를 “대덕구(이하 “구””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100 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가목 및 같은 항 나목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하도록”을 “사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또는”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대부정리부의 비치)”를 “(대부관리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정리부를”을 “대부관리대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부”를 “대부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을 “재산관리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9조제6호 중 “수의매각을 할수 있다.”를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위치·규모 재원확보”를 “위치·규모·재원확보”로,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신·개축”을 “신축·개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응 집셋트, 카텐”을 “응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7조 중 “비품대장”을 “비품관리대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영 제81조제4항”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소유권이전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한다.

제64조 중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u>공유재산심의회</u>(이하“<u>심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⑤ (생략)</p> <p>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u>법 제16조제2항제4호</u>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 6.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삭제</p> <p>5. <u>개별법령 또는 조례</u>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p> <p>제5조(<u>공유재산 관리대장</u>) (생략)</p> <p>제7조(실태조사) ①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u>공유재산심의회</u>(이하 “<u>심의회</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 ----- <u>법 제16조제2항제6호</u>-----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5. <u>조례</u>----- ----- -----</p> <p>제5조(<u>공유재산관리대장</u>)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 7.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7조(관리)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 자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

----- 무상사용허가 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가 -----

-----.

②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① -----
-- 사용허가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
-

6. 사용허가 -----

7.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관리대장의 비치) -

사용허가관리대장을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

----- 사용
허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를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생략)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4. (현행과 같음)
5. ----- 대덕구(이하 “구”---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구로 이전하였을 때

6.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3.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6.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 사용허가를 -----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
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 바. (생략)

3. (생략)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
면할 수 있다.

가. 대덕구 소상공인 물류지원
센터를 소상공인에게 사용·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100퍼
센트 -----

라. ~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

③ -----

-----.

가. -----
----- 사용허가

수익허가하는 경우

나.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
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
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하
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
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24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
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
다.

1. (생 략)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
합이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하
는 경우

가. 삭 제

나. ~ 라. (생 략)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
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
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나. -----

----- 사용허가 -----

④ -----

1. (현행과 같음)
2. -----

----- 사용하도록 -----

나. ~ 라. (현행과 같음)

⑤ -----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 10.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 사용
허가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가 또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관리대장의 비치) ① --
----- 대부관리
대장을 -----
-----.

② ----- 대부관리대장-----

-----.

1. ----- 재산관리대장
과 대부재산 현황-----

2. ----- 연월일

3.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인건비,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 ~ 4.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 ~ 5. (생략)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2.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2. ~ 5. (현행과 같음)

6. -----

----- 매각
하는 경우

7.·8. (생략)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청사 등의 신축시 위
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
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
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
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
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
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
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
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3. (생략)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
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7.·8. (현행과 같음)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위
치·규모·재원확보 -----

----- 수립·시행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
의) -----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
원회 운영조례」-----
-----.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

1. ---- 신축·개축 -----

2.·3. (현행과 같음)

4. 응접세트, 커튼 -----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 8. (생략)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 ① (생략)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5. ~ 8. (현행과 같음)

제57조(비품의 관리) -----
----- 비품관리
대장-----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1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생략)

② ~ ④ (생략)

제64조(공유재산의 합필) 재산관리
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 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
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신설>

소유권이전등기-----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유재산의 합필) -----
----- 공유재산 -

-----.

제66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개정에 따라 연관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용어 정비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6.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전화: 042-608-5303, FAX: 042-608-3829, E-mail: 2garde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담당(전화: 042-608-5303, 5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한”을 “사용허가를 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계약(갱신) 년월일”을 “계약(갱신) 연월일”로, “정수 년월일”을 “정수 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대부(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을 “대부·사용허가 재산 현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 목적</p> <p>5.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 기간</p> <p>6. (생략)</p> <p>② (생략)</p> <p>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0조(대부 및 <u>사용·수익허가</u> 정</p>	<p>제25조(행정재산의 <u>사용허가</u>) ----- ----- ----- ----- <u>사용허가</u> ----- ----- -----.</p> <p>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용허가</u> ----- -----</p> <p>5. <u>사용허가</u> ----- -----</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사용허가를</u> 한 ----- ----- -----.</p> <p>제30조(대부 및 <u>사용허가</u> 관리대장)</p>

리대장)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 21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관리대장-----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된 “체육단체”의 용어의 뜻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위촉 위원”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조제2항).
 - 다.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전화: 042-608-6593, FAX: 042-608-3823, E-mail: do111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도가람(전화: 042-608-65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체육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6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체육단체에 대한 보조)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담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는 운영비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

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u></p>
<p>제5조(구성) ① (생 략)</p> <p>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촉 위원</u>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제6장</u></p> <p><u><신 설></u></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위원</u> ----- -.</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체육단체 지원</u></p> <p><u>제19조의2(체육단체에 대한 보조)</u></p> <p>① <u>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u></p> <p><u>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u></p> <p><u>2. 사무실 운영 경비</u></p> <p><u>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u></p>

<신 설>

<신 설>

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는 운영비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관광진흥법」 제48조의3(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관광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나. 구청장의 책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요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내용에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시킴(안 제4조제6호 신설).

라. 공정·생태관광등 추진 사업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공정·생태관광등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전화: 042-608-6735, FAX: 042-608-3823, E-mail: jrjojo@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전홍수(전화: 042-608-67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정·생태관광의 육성”을 “공정·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육성”으로,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공정·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이하 “공정·생태관광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4조의 제목“(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생태 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공정·생태관광”을 각각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정·생태관광 이해관계자의”를 “공정·생태관광등의 이해관계자”로, “참여형 공정·생태관광”을 “참여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제4조제2항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생태관광 육성”을 “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정·생태관광”을 각각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공정·생태관광”을 각각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지원사업)”을“(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 관광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까지 중 “공정·생태관광”을 각각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정·생태관광등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제14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공정·생태관광”을 “공정·생태관광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생태관광등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6조제1항 중 “공정·생태관광 육성”을 “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공정·생태관광”을 각각 “공정·생태관광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정·생태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공정·생태 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육성 ----- 공정·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u> .</p> <p>제2조(정의)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u></p>
<p>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구청장은 <u>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u></p>	<p>제3조(책무) ① -----</p> <p>-----</p> <p><u>공정·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이하 “공정·생태관광등”이라 한다)-----</u> .</p> <p>② ----- <u>공정·생태관광등-----</u></p>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생태 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생태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③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① -- 공정·생태관광등 -----
-----.

② 공정·생태관광등의 -----
-----.

1. 공정·생태관광등의 -----

2. 공정·생태관광등의 -----

3. 공정·생태관광등의 -----

4. 공정·생태관광등의 이해관계자
----- 참여형 -----

5. 공정·생태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 설>

6.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를 담
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

5. 공정·생태관광등의 -----

6. 관광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7. ----- 공정·생태관광등의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 -----

-----.

1. 공정·생태관광등의 -----

2. 공정·생태관광등의 -----

3. 공정·생태관광등의 -----

4. ----- 공정·생태관광등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이 위촉한다.

1.·2. (생략)

3. 공정·생태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생태관광 실행 지역공동
체 거주 주민

5.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제1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정·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의 양
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
원 사업

3. 공정·생태관광 콘텐츠 및 프
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
팅 사업

<신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생태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2. (현행과 같음)

3. 공정·생태관광등의 -----

4. 공정·생태관광등의 -----

5. ----- 공정·생태관광등-----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사업 등) ① -- 공정·
생태 관광등-----

-----.

1. 공정·생태관광등의 -----

2. 공정·생태관광등의 -----

3. 공정·생태관광등의 -----

4. 공정·생태관광등의 -----

5. 공정·생태관광등의 국내외 교
류 및 협력사업

6. ----- 공정·생태
관광등-----

<신 설>

제16조(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생략)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생태관광등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6조(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① ----- 공정·생태관광등의 육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8조(지원센터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공정·생태관광등의 -----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 -----
3. <u>공정·생태관광</u>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3. <u>공정·생태관광등의</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공정·생태관광</u> 육성 및 지원 사업 자원관리	5. <u>공정·생태관광등의</u> ----- -----
6. 그 밖에 <u>공정·생태관광</u>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u>공정·생태관광등의</u>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장·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263, FAX: 042-608-3811,

E-mail: ejan368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최재희
(전화: 042-608-6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③ (생략)</p> <p>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p> <p style="padding-left: 20px;">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
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③ (생략)

제4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

-----.

②·③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총괄부서 지정 등 공약사항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실천계획의 이행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의 설치, 운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공약사업의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을 구 홍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261, FAX: 042-608-3811, E-mail: ipkni@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양윤정(전화: 042-608-6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기초로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홍보실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구청장 및 주민평가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 이행 및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분석·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사업주민평가단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연령별·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천·공모·위촉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운영 등)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평가단은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 방법) ① 평가단은 공약사업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및 주민보고회) ①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

단에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업 이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약사업주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2. 관련 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관내 상습 불법투기 지역 8개소
4. 촬영범위 및 시간: 클린지킴이(CCTV) 설치구역 반경 5~20M, 24시간 센서감응식 촬영
5. 행정예고기간: 2022. 5. 27. ~ 6. 16.(20일간)
6. 공고방법: 대덕구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deok.go.kr)
7. 의견제출
 -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참조

-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2)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기간: 2022. 6. 16.까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 042-608-6834, FAX: 042-608-3834, E-mail: dossm1004@korea.kr)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